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97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8. 5. 8

발 의 자 : 김해숙 의원 등 13인

□ 제안이유

-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(2007. 11. 6공포)되어
시 조직의 부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개정하고
-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(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)의 규정에
의하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
대상기관에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범위를
명확히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부서명칭 개정(안 제5조제1항제2호나목)
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 → 성남시정보문화센터
-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
추가 (안 제5조제1항제5호)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“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”를 “성남시정보문화센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 중 “성남시문화재단”을 “성남문화재단”으로 하고 성남문화재단 다음에 “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”을 삽입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----- ----- <u>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</u> ----- 다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----- ----또는 출연한 법인(성남산업진흥재단, <u>성남시문화재단 등</u>). 다만,----- ----- ② (생략)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<u>성남시정보문화센터</u> ----- 다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또는 출연한 법인(성남산업진흥재단, <u>성남문화재단,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등</u>). 다만,----- ② (현행과 같음)